

3_편

제2장

관광사업

제8절 관광종사원

1. 관광종사원의 자격

1) 관광종사원 자격의 종류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자격

- ① 호텔경영사, ② 호텔관리사, ③ 호텔서비스사, ④ 관광통역안내사, ⑤ 국내여행안내사
- ⑥ 국외여행인솔자 자격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

컨벤션기획사 1급 및 2급,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2) 관광업무별 자격기준

(1) 관광종사원 자격소지자 고용 권고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소지자 의무고용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 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3) 관광종사원 자격증 대여금지

관광종사원은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관광업무별 자격기준(령 제36조 관련 별표 4)

업종	업무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자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자
여행업	외국인관광객에게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	
관광숙박업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호텔경영사 자격을 취득한 자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객실관리책임자 업무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3성급 이하의 관광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가족호텔업 및 호스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현관·객실·식당의 접객업무	호텔서비스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관광종사원의 국가자격시험 등의 권한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종사원중 관광통역안내사·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한국관광공사에, 그리고 국내여행안내사 및 호텔서비스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각각 위탁한다.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였다.

또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은 업종별관광협회(한국여행업협회)에 위탁하였다.

따라서 관광종사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물론 일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험의 실시 및 공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90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응시자격

가) 호텔경영사 시험

- ①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② 4성급 이상 호텔의 상근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호텔관리사 시험

- ①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관광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④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3) 시험실시방법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외국어 시험을 제외한 필기시험), 외국어시험(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만 해당) 및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을 함께 시행하고, 그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을 시행한다.

(4)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기준

가) 필기시험

1.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구분	시험과목	배점비율
가. 관광통역안내사	국사	40%
	관광자원해설	20%
	관광법규(「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의 관광 관련 법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0%
	관광학개론	20%
	계	100%
나. 국내여행안내사	국사	30%
	관광자원해설	20%
	관광법규	20%
	관광학개론	30%
	계	100%
다. 호텔경영사	관광법규	10%
	호텔회계론	30%
	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	30%
	호텔마케팅론	30%
	계	100%
라. 호텔관리사	관광법규	30%
	관광학개론	30%
	호텔관리론	40%
	계	100%
마. 호텔서비스사	관광법규	30%
	호텔실무(현관·객실·식당 중심)	70%
	계	100%

2. 합격결정기준: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의 점수가 위의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이어야 한다.

나) 외국어시험

관광종사원 외국어 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관광통역안내사 :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 1과목
- ②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 : 영어
- ③호텔서비스사 : 영어, 일어, 중국어 중 1과목

외국어 시험은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및 급수는 응시원자 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 및 급수여야 한다.

외국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급수는 별표 15와 같다.

2.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또는 급수

자격구분 시험명		관광통역 안내사	호텔 서비스사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만점/ 최고급수
		영어	TOEIC	760점 이상	490점 이상	700점 이상
TEPS	677점 이상		381점 이상	670점 이상	728점 이상	990점
TOEFL(CBT)	217점 이상		147점 이상	207점 이상	230점 이상	300점
TOEFL(IBT)	81점 이상		51점 이상	76점 이상	88점 이상	120점
G-TELP (Level 2)	74점 이상		39점 이상	66점 이상	79점 이상	100점
FLEX	776점 이상		381점 이상	670점 이상	728점 이상	1000점
PELT(main)	345점 이상		181점 이상	302점 이상	373점 이상	600점
일본어	JPT	740점 이상	510점 이상	-	-	990점
	日檢(NIKKEN)	750점 이상	500점 이상	-	-	1000점
	FLEX	776점 이상	-	-	-	1000점
	JLPT	1급 이상				1급
중국어	HSK	5급 이상	4급 이상	-	-	6급
	FLEX	776점 이상	-	-	-	1000점
	BCT	4급 이상				5급
	CPT	750점 이상				1000점
	TOP	고급5급 이상				고급7급

불어	FLEX	776점 이상				1000점
	DELF	DELF B2 이상				DALF C2
독일어	FLEX	776점 이상				1000점
	독일어능력 검정시험	Goethe-Zertifikat B1(ZD) 이상				Goethe- Zertifika t C2
스페인어	FLEX	776점 이상				1000점
	DELE	Diploma Intermedio 이상				Diploma Superior
러시아어	FLEX	776점 이상				1000점
	TORFL	1단계 이상				4단계
이탈리아어	CILS	Livello Due-B2 이상				Livello Quattro -C2
	CELI	CELI 3 이상				CELI 5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 도네시아어 아랍어	FLEX	625점 이상				1000점



다) 면접시험(규칙 제45조)

면접시험의 평가과목은 ①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예의·품행 및 성실성, ④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이고, 합격점수는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이어야 한다

(5) 시험의 면제

- ①법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6과 같다
- ②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 ③제1항에 따라 시험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에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의 면제기준(제51조 관련)

구 분	면제 대상 및 면제 과목
1. <u>관광통역안내사</u>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p> <p>나.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p> <p>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p> <p>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 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p> <p>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이 경우 실무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그 비중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30% 2) 관광안내실무: 20% 3) 관광자원안내실습: 50%

<p>2. <u>국내여행안내사</u>↵</p>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나.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p>
<p>3. <u>호텔경영사</u>↵ ↵ ↵ ↵ ↵ ↵ ↵ ↵ ↵</p>	<p>가.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나.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1등급 관광호텔의 총괄 관리 및 경영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다. 국내호텔과 체인호텔 관계에 있는 해외호텔에서 호텔경영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국내 체인호텔에 파견근무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p>

4. 호텔관리사↵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호텔경영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5. 호텔서비스사↵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나. 관광숙박업소의接客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6) 합격자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종료후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이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4) 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교부

(1) 관광종사원의 등록

시험에 합격한 자는 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광종사원등록신청서에 사진 2매를 첨부하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및 관광통역안내사는 한국관광공사에, 국내여행안내사와 호텔서비스사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각각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관광종사원 등록 관광종사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관광종사원으로 등록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가)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에 맞는 자로서 국외여행인솔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외여행인솔자 등록신청서에 관련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3진 2매를 첨부하여 업종별관광협회(한국여행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업종별관광협회는 국외여행인솔자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광종사원의 결격사유가 없고,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5) 관광종사원의 준수사항

- ①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여행업에 종사하여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 한정)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 ③ 관광종사원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6) 관광종사원의 결격사유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진흥법에 따라 등록·허가·신고·지정 또는 사업계획승인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만, 관광종사원의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 관광종사원 자격취득은 가능하다.

7)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합격결정 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종사원의 국가자격시험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①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 ②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사람



8) 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②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③ 관광종사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에 부정 또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④ 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40조 제1호	자격취소			
나.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40조 제2호	자격취소			
다.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40조 제3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5개월	자격취소

2. 관광종사원의 교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39조).

3_편

제2장

관광사업

제8절 관광종사원